

공통적인 것과 공적·사적 소유*

하용삼**

| 국문초록 |

원자적 개인은 도그마로 주어진 말을 사용한다. 원자적 개인은 말의 제도화로서 법의 원천인 국가의 시민이 된다. 국가의 법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은 말·이성·법으로 연결된 생산자의 신체이고,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자본가는 공통적인 것을 소유권을 통해서 착취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와 법 앞에 평등이 국가의 법에 기입되어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법은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이 경우에 공통적인 것은 사적 소유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그는 공적·사적 소유의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의 평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으로 국가의 법을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이고, 공통적인 것을 전제가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으로서 공통적인 것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은 공통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성의 평등, 법 앞에 평등,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제이다. 사적·공적 소유와 공통적인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말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1300)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강사(y-sha@hanmail.net)

법 앞에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이 사회적 협력의 생산물이고, 공통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은 공통적인 것이다. 말, 법,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공리적으로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국가와 연대하는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공통적인 것, 공적·사적 소유, 공동체, 국가, 말, 법

| 차례 |

1. 서문
2. 국가, 자본, 원자적 개인
3. 디지털화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
4. 말의 제도화로서 법 그리고 공적·사적 소유
5. 결론

1. 서문

현대사회에서 원자적 개인은 공통적인 것들(communs)의 자치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국가와 자본을 자신의 정치적·법적·경제적 전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와 자본이 원자적 개인에게 공동체·'주체적 자연'과 공통적인 것(the common)·'객체적 자연'이 된다.¹⁾ 정치적으로 공적 소유

1) 이 논문에서 공통적인 것들(the commons)은 전근대의 공유지, 공유지와 연관된 모든 재화의 총체 그리고 이 재화와 관계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즉 토지, 살림, 물, 공기, 광물 등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이디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연구공간 L역음,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의 민주주의가 자치 공동체의 역사적·사회적 연대와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근원적으로 원자적 개인은 도그마로 주어진 공동체·주체적 자연의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공통적인 말의 제도화로서 법으로 연결된 국가의 시민이 된다. 국가의 법은 공통적인 것·객체적 자연과 공동체·주체적 자연의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 민주주의는 지식·부와 연결된 정치가·관료의 과두제 국가의 공적 주권으로 되었다. 이와 평행하게 자본주의는 객체적·주체적 자연의 공통적인 것을 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무제한적으로 자본을 증식시킨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무제한성을 추구하고,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정치의 무제한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과두제 국가의 민주주의는 자본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적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이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방어하기 위해 배제된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서로 대립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과두제 국가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과두제 국가의 민주주의와 초국가적 자본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개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디지털화에서 아이디어, 코드, 이미지, 문화생산물은 주로 생산주체(감성과 이성)의 비물질적인 생산물이고, 이 생산물은 다시 생산주체와 결합한다. 이 생산물은 생산주체의 신체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비물질적인 생산에서 더 많은 자율성

2012, 난장, 13-14쪽. M. Hardt, "The Common in Communism", 연구공간 L 옮김, 「공통적인 것과 커뮤니티즘」, 연구공간 L 역음, 『자본의 커뮤니티즘, 우리의 커뮤니티즘』, 난장, 2012, 34쪽) "사실상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것은 발견되었다기보다는 생산되는 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들이 전 자본주의적으로 공유된 공간들을 지칭"하고, 이와 달리 "공통적인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강조한다." (A. Negri·M. Hardt,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The Penguin Press, 2004, p. XV/A. Negri·M. Hardt,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20쪽)

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법적 근거이고, 자본순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생산과정 외부에서 특허권,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통해 지대형태로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착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비)물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을 방어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구성한다.

네그리와 하트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법적 근거로서 국가를 지배 장치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디지털화에 의해서 더욱 확장되는 비물질적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시도한다. 랑시에르는 자본가를 위한 지배 장치와 법 앞에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로서 국가의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네그리와 하트, 랑시에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이 동일한 공통적인 것임을 통해서 국가와 연대하는 자치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 자본, 원자적 개인

근대 이전에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이 공적·사적 소유를 통해서 화폐와 상품(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원자적 개인이 되었다. 원자적 개인은 자본의 생산수단과 국가의 정치체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공적·사적 소유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원자적 개인이 되었다.

“인간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개별화된다. 처음에 그는 유적 존재, 종족 존재, 군서 동물로 등장한다 — 정치적 의미에서 정치적 동물은 결코 아닐지라도 교환 자체가 이러한 개별화의 주요 수단이다. 교환은 군서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해체한다. ...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자는 예컨대 순전히 객체 없이 주체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에게 마주 서는 사물이 이제 그는 그가 먹어 치우고자 하고 그가 먹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²⁾

경제적으로 공통적인 것들(communs)의 객체적 노동조건과 분리된 사람들은 시장의 교환체계에서 자본으로서 화폐와 교환되는 노동력 상품이 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정치적으로 과두제 국가의 민주주의가 자치 공동체의 역사적·사회적 연대와 분리된 원자적 개인의 전제가 된다. 원자적 개인들은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 사적 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매달리는 개인들의 생활방식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들을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부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정치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³⁾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개개인에게서 발생하는 욕망이나 필요성의 기하급수적인 증식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양자 간의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게 하는 운동인 것이다.” 이와 달리 원자적 개인들이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는 “거짓된 민주주의”이다.⁴⁾

2) K. Marx, *Marx Engels Werke Bd. 42,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83, S. 404/K. Marx,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백의, 2000, 123쪽.

3) J. Rancière, *La haine de la démocratie*, 허경 옮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인간사랑, 2011, 123-124쪽.

4) J. Rancière, 앞의 책, 2011, 135-136쪽, 143쪽.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그 원리가 자주 채택되었던 절대적 개인주의는 한 가정의 자녀가 그의 부모나 형제들과 조금도 연대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절대적 개인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재

“조상이나 관습, 소속 사회계급, 사회적 연계 등이 없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개인, 이것이 텐느(Taine)가 예상했던 거짓된 민주주의에서의 인간이다. … 결국 개인은 이전에 존재했던 ‘협동적 정신’을 뒤로 하고, 또한 오랜 시간을 통해 결속의 연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공동의 명예를 유지시켜 줬던 각종 직업 공동체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자아만을 간직한 채 홀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원자화된 개인주의의 승리로서 힘의 승리, 다수의 승리, 그리고 간교함의 승리인 것이다.”⁵⁾

원자적 개인은 객체적 노동조건으로서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살게 되었다. 원자적 개인은 국가의 공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해서 공동체적 연대와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다. 원자적 개인은 과두제 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본가의 생산수단에 의해서 결합되고, 지배되었다. 사실 자본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자본의 무제한성을 추구하고,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기초로서의 가족을 부정하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서,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으면서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하나의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연성’이라는 것이며, 그것도 각자의 기호나 취향의 우연성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사슬일 것이다.”(알프레드 프이에(Alfred Fouillée), 『프랑스의 정치·사회 민주주의』(*La Démocratie politique et sociale en France*, Paris, 1910), pp. 131-132를 J. Rancière, 앞의 책, 144쪽에서 재인용)

- 5) 알프레드 프이에(Alfred Fouillée), 앞의 책, pp. 131-132를 J. Rancière, 앞의 책, 144-145쪽에서 재인용. 필자 강조. 랑시에르는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회가 과두제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대의하는 민주주의를 ‘거짓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어제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사회도 과두제의 게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정확히 말해 민주적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수에 대한 정부의 권력행사는 항상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국가들이 고대 그리스와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의제도는 인구증가와 근대국가의 “방대한 영토에 맞춰 변형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닌 것이다. 대의제는 공공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이의의 여지없이 과두제의 형태를 갖게 된다. 대의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신분, 계급, 재력 등이 우선적으로 대표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같은 책, 116쪽, 118-119쪽)

공적 영역에서 정치의 무제한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본과 정치의 무제한성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어떤 해결방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이 네 용어는 19세기 초에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민주주의는 인간의 지배, 다시 말해 ‘시민’이란 추상적 이상 뒤에 감춰진 이기적인 소유자로서 개인의 지배입니다.” 결국 네 용어의 등가 체계는 “소비 뒤에서 자본주의를 지우고, 개인주의 뒤에서 계급투쟁”을 지운다. 이 등가 체계에서 거짓된 민주주의의 치안은 “자리와 기능을 분배하는 전문가의 권위 아래서 사회적 몸체의 질서의 정립”이다. 이에 반해 “‘인민의 권력’으로서 정치”는 “공통의 권력이 아니라, 누구나의 권력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토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정치의 토대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민주적인 담론이 개별적 욕망들에 대립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경건한 전망 뒤로 역류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정부주의’입니다. 정치는 공동체들을 통치할 권리를 부여하는 어떤 ‘능력’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⁶⁾

결국 네 용어의 등가 체제에서 시민은 자본증식을 위한 노동력 상품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과두제 국가의 공적 소유에서 자치 공동체의 연대와 분리된 원자적 개인이 되었다. ‘이기적인 소유자’와 ‘소비적 개인주의의 무제한적 욕망’의 체제로서 거짓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의해서 개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등가 체제의 기점이 되고 있는 잉글랜드의 공유지 인클로저는 섬유 생산의 원료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수단이 되었다. “증앙집권화한 정치체계는 공적 주권과 사유재산” 간의 분리에서 생겨났다.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사적 소유하게 됨으로써 자본이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한 “자본의 집중은 과학적 진보와 함께 18

6) J. Rancière, *Et tant pis pour les gens fatigués: Entretiens*, 박영옥 옮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인간사랑, 2020, 723-725쪽.

세기 초반에 엄청난 기술적 성공을 가져왔다.”⁷⁾ 이런 조건에서 시민은 자치 공동체의 성원이 아니라 원자적 개인이 되었고, 동시에 공통적인 것들의 공유인(commoner)이 아니라 자본증식을 위한 상품으로서 임노동자가 되었다. 원자적 개인은 ‘비유기적 신체’로서 공통적인 것들, 말, ‘관습과 민속법’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유대를 상실한다. 원자적 개인은 과두제 국가의 민주주의와 자본의 생산수단으로서 공적·사적 소유에 종속된다.

“소유의 권리는 헌법에 적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상식을 규정하는 사회구조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아는 사적 소유는 근대와 더불어 발명되었고, 근대 시기 동안은 정치적 열정의 기반 및 궁극적 지평을 규정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소유 없이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⁸⁾

공유지 인클로저는 산업자본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두제 국가는 자본증식을 자동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법적 토대가 되고,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에 의한 자본증식을 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품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과두제 국가는 부와 지식을 가진 정치가와 관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누구나의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단지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뭔가를 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각의 소유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소유주가 자기가 가진 물건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평화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보호한다.”

7) F. Capra·U. Mattei, *The Ecology of Law*, 박태현·김영준, 『최후의 전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89-90쪽.

8) A. Negri·M. Hardt,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 85/A. Negri·M. Hardt, 이성준·정유진 옮김, 『어셈블리』, 알렙, 2020, 168쪽.

“국가의 행동은 항상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그 사용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들에 맞서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받는다. 아마도 그러한 국가의 강제력은 자기 재산이 방어되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배제당한 이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폭력 형태보다도 실제적이고 강력하다.”⁹⁾

현재 디지털화에서 아이디어, 코드, 이미지, 문화생산물은 주로 사회적 도그마로서 말·이성·법으로 연결된 생산주체의 비물질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노동주체로 되돌아가는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자본순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비물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특허권, 지적 재산권, 상표권)을 통해서 공유지 인클로저와 지대형태와 같이 공통적인 것을 착취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우리는 자본순환을 강제하는 과두제 국가의 숨겨진 기능을 드러내고자 한다. 자본순환 도식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등장과 더불어 실현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서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에 의해서 시민은 노동력 상품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순환 도식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법이 없다면, 자본증식은 불가능하게 된다.

자본순환 도식 $[G-W(A+Pm)\cdots P\cdots W'-G']$ ¹⁰⁾은 두 가지 역사적 전제를

9) Robert Hale, "Coercion and Distribution in a Supposedly Non-coercive Stat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8:3, September 1923, pp.470-494, quote on p. 472를 A. Negri·M. Hardt, op. cit., 2019, requote on p.87, p.104/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72-173쪽 재인용, 200쪽.

10) G는 화폐, W는 상품, A는 노동력, Pm은 생산수단, P는 생산과정, W'는 처음 시장에서 구매한 상품W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상품, G'는 W'와 등가의 화폐이다. 사실상 자본순환 도식에서 G는 자본으로서 화폐이다. 자본순환 도식이 성립되기 위해서 '자본의 시초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의 **시초 형성**은 화폐 자산으로 실존하는 가치가 낡은 생산양식의 역사적 해체 과정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객체적 노동 조건들을 **구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된 노동자들로부터 **살아 있는** 노동 자체를 돈을 주고 매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제 자본의 시초 형성이후에 "**자본에게 고유한 것은 다만 그가 주어진 것으로 발견하는 대량의 손과 도구를 결합하는 것뿐이다. 자본은 이것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서 응집시킨다.**" 이것이 자본의 **실재적인** 축적, 노동자들을 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전제는 “자유노동과 화폐를 재생산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이 자유노동의 화폐와의 교환”으로서 “임노동”이고, 다른 전제는 “자유노동이 그것의 객체적 실현 조건들로부터 — 노동 수단 및 노동 재료로부터 — 분리되는 것”이다.¹¹⁾ 자본순환 도식에서 생산수단과 시민의 노동력이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되는 경우에 자본증식은 실현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순환 도식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등장과 더불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급격한 분리가 기초되어 있다. [...] 이 모든 발전의 기반은 농부들에 대한 수탈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과격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그러나 서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가 동일한 운동을 거친다”(『자본론』 프랑스어판, 315쪽).¹²⁾

마르크스는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역사적으로 서유럽 제국에서 발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는 시민이 노동력 상품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자치 공동체의 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통적인 것들로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자적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수단과 노동력 상품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국가의 법이 없다면, 자본순환 도식은 불가능하게 된다. 과두제 국가와 자본은 생산수단을 공적·사적으로 소유한다. 이 조건에서 ‘자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구들과 더불어 일정한 지점들에 축적시키는 것이다.”(K. Marx, op. cit., 1983, S. 414 f/ K. Marx, 앞의 책, 2000, 136-137쪽.)

11) K. Marx, op. cit., 1983, S. 383/K. Marx, 앞의 책, 2000, 97쪽.

12) K. Marx·F. Engels, *Marx Engels Werke Bd. 35, Briefe(Januar 1881- März 1883)*, 1979, S. 166/K. Marx·F. Engels, 김호균 옮김, 「마르크스가 제네바에 있는 베라 이바로브나 자슬리치에게」(런던, 1881. 3. 8),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중원문화, 서울 1990, 211쪽.

3. 디지털화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

현재 디지털화가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노동자나 투자자보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가장 **희소한 자원**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는 맥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이 맥 법칙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의 승자가 대부분의 보수를 차지하게 된다. 애플은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서 아이폰의 설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아이폰의 조립은 중국에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팅을 포함하는 공장의 자동화에 의해서 아이폰의 조립이 최종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나머지 국가들에서 단순노동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 자본과 달리 디지털 자본은 상품을 싸게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 자본에 의한 상품생산의 한계비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존 자본의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창조적 혁신가와 기업가는 기존 산업에서와 같이 노동자와 자본가와 더 이상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상의 더 많은 몫을 가지게 된다. 이런 디지털화의 맥 법칙에 의한 승자독식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경제적 전망에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정부가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느낀다면,” 시위를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이전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시위가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¹⁴⁾

13) K. Schwab and 26 other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진희·손영수·최시영 옮김,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흐름 출판, 2016, 133-148쪽, 159-160쪽.

14) “1980-1990년 이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평등의 재증대를 목도한다.”(T. Piketty, *Capital et Idéologie*, 안준범 옮김,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39쪽)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부와 권력의 편중을 더욱더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K. Schwab and 26 others, 앞의 책, 157-158쪽)

현재의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소는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의 주창자들은 이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오로지 ‘혁명’을 향한 질주에만 신경을 쓴다. 1~3차 산업혁명에서 보았듯이, 기술발전이 곧 사회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노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기술이 노동의 인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관된 문제다.”¹⁵⁾ 결국 디지털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체제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앞선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부와 번영은 균등하지 않게 배분되었고, 지금도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또 과거의 산업혁명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수도 있으며, 혜택을 사유화하고 부의 기회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제도로 인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슈밥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혜택의 공정한 분배’, ‘외부효과 관리’, ‘인간 주도의, 인간 중심의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지와 적절한 투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¹⁶⁾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변화 없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까? 1~3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켰다. 현재의 체제에서 디지털화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국가와 자본이 공적·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의 이해 당사자는 1~3차 산업혁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15) 이문호,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 -」, 『노동연구』 4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50쪽.

16) K. Schwab,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이엽,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새로운현재, 2018, 31-34쪽.

그러나 디지털화에서 생산물은 사회적 도그마로서 말·이성·법으로 연결된 생산자의 신체이다. 이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생산자의 신체 자체가 생산수단이 된다. 이 생산수단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재인식하게 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유지 비극’을 반박하는 오스트롬의 주장을 승인하면서, 그녀와 다른 개방된 ‘공통적인 것’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의 사용과 접근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엘리너 오스트롬은 협치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올바르게 집중한다. ... 그녀는 ‘공유 자원’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와 자본주의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정한다. 집단적인 자주 관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태가 이미 존재한다. ‘자치적인 공통재산(common property) 협의에서는 규칙은 참여자 자신들이 고안하고 수정한 것이고, 또한 감시하고 강제한 것이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롬의 주장을 진심으로 승인한다.” 오스트롬은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소규모 공동체, 명확히 안팎의 경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 대해 네그리와 하트는 그녀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 그들은 이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새롭고 더 확장적인 “더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가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¹⁷⁾

하트는 마르크스의 근대적 진보과정을 수용하면서, 농업에서 공업을 거쳐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에 이르게 되고, 이 비물질적인 생산이 전근

17)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99/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91-192쪽 필자 번역수정.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25쪽 참조.

대적 공통적인 것들의 새로운 형태로서 공통적인 것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하트는 ‘노동 자체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주체의 신체(“고정자본이 된 살아 있는 존재”) 자체가 생산수단으로 되는 공통적인 것과 근접성을 강조한다. “양자 모두 인간에 의한 인간성의 생산, 인간에 의한 사회적 관계의 생산, 인간에 의한 삶형태의 생산을 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것의 맥락 안에 있다.”¹⁸⁾ 이 조건에서 우리는 농업, 공업과 다른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의 핵심적 차이를 발견한다. 농업과 공업의 생산자는 주체와 다른 생산물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 비물질적인 생산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은 모두 주체이다.

디지털 생산물, 정동, 이미지, 아이디어, 언어, 지식, 돌봄, 양육과 같은 비물질적인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와 자신의 활동으로서 비물질적인 생산수단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와 생산물 모두 주체이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생산에 있어서 생산수단이 자신의 신체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생산자의 신체를 사유화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이 특허권, 지적 재산권, 상품권에 의해서 지대형태의 “소유물로서 사유화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지만, “아이디어들, 이미지들, 정동들의 생산성이 최대로 실현되려면 그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공유되어야 한다. 사유화되는 경우 그것들의 생산성은 급격히 감소된다.”¹⁹⁾ 자본가는 생산과정 외부에서 (디지털) 비물질적 생산물을 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품권과 같은 지대형태로서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자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비물질적인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은 그 특성상 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의 배타성,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적인·확장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경

18) M. Hardt, 앞의 책, 2012, 43-44쪽.

19) M. Hardt, 앞의 책, 2012, 33-34쪽.

제적·정치적 토대로 될 것이다.

“오늘날 소유 세계의 무게중심은 물질적 소유 형태(이것은 점유와 배제에 대한 생각의 고전적 준거로 기여했다)에서 비물질적 소유 형태로 이행하고 있다. 아이디어·이미지·문화·코드와 같은 비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어떤 점에서는 즉각적으로 복수적이고 사회적이다. 물질적 소유물을 위해 만들어졌던 낡은 배제 및 희소성의 체제에 순응해서 비물질적 소유물을 만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뿐더러,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비물질적 소유는, 네트워크 문화에 의해 열린 자유 및 협동의 형태와 더불어, 우리가 사회적 부와의 비소유적 관계를 맺을 잠재력—즉 평등한 접근과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감지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비소유적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 부를 공유할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²⁰⁾

물질적 소유권은 “점유권, 통제권, 출입금지권, 향유권, 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다.²¹⁾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복수적·사회적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근본적으로 법의 원천으로서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고, 정치·경제·문화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물질적인 소유권은 물질적인 소유권보다 정치·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복수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들은 (디지털) 비물질적인 노동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가공간을 초월해서 사회적·협력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노동과 사적 소유의 연결은 점점 경계가 불

20)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90/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78쪽.

21) 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70쪽 역주. “어떤 특정한 대상(예컨대 공장이나 토지, 물품)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기 힘들고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중첩될 수 있게 되어 역설적으로 해당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없이는 대상의 점유, 통제, 처분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A. Negri·M. Hardt, 앞의 책, 2020, 170쪽 역주)

분명하게 되어가고 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특허법이 상상 하듯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한 사람이 고립되어 노동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생산할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사회적으로 함께 생산할 뿐이다. 다시 말해 부는 계속 점점 늘어나는 노동 협력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노동으로 생산”된다.²²⁾ 이 조건에서 노동의 생산물이 사적 소유와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공통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이 공통적인 것으로 경향이 강할수록 이것에 비례해서 국가는 노동과 사적 소유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게 된다.

4. 말의 제도화로서 법 그리고 공적·사적 소유

인간은 혼자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친족관계, 종족집단, 공동체)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 말은 소리와 기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록된다. 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심화하고, 확산한다.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²³⁾ 이와 관련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형태들」 “노동하는 개인들, 자급

22) A. Negri·M. Hardt, op. cit., 2019, p. 93/A. Negri·M. Hardt, 하트, 앞의 책, 2020, 183쪽.

23) 유아는 선택의 여지없이 이미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말은 도그마이다. “도그마는 사실의 확인과 논증을 초월하는데, 그 점에서 언어는 가장 도그마적이다.” 모국어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 이 맹목적인 믿음이야말로 나의 자유, 내 의사 표현과 행위의 자유, 요컨대 이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도그마는 인간이 독단과 자폐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비로소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성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성은 도그마에 기초할 때에만, 법에 근거할 때에만 이성적이다.”(A. Supiot, *Homo juridicus*, 박제성·배영란 옮김, 「역자 서문」,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6, 9-10쪽)

자족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연적인 노동 조건들에 대한 소유의 세 번째 형태”로서 “**게르만적** 소유”에서 고립된 개인이 말을 사용할 수 없고,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일 수 없고, 그리고 말의 제도화로서 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고립된 개인이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토지에 대한 소유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는 동물이 그러하듯이, 토지를 실제로 소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땅에 소유로서 관계하는 것은 언제나 종족, 다소 자생적이거나 또는 이미 역사적으로 발전된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 (Gemeinde)에 의한 토지의 평화적이거나 강제적인 점거에 의해서 매개된다.” “개별자에 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그 자신은 한 인간 공동체의 자연적 구성원으로서만 언어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언어로서 관계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개별자의 산물로서의 언어란 어불성설(語不成說, Unding)이다, 그러나 소유도 마찬가지이다. 언어가 공동체(Gemeinwesen)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자체는 다른 점에서 보면 공동체의 현존이고 공동체의 자명한 현존이다.”²⁴⁾

마르크스는 최초의 생산 조건들에서 생산자가 “자신에게 속하는 비유기적 신체로서 관계하는 자연적 실존 조건들은 그 자체로 이중적이다”라고 말한다. 즉 최초의 생산조건들에서 생산자에게 “주체적 자연”으로서 “한 가족, 종족, 부족 등”과 “객체적 자연”으로서 “대지, 토지”는 자연적 전제이다.²⁵⁾ 현대사회에서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를 관찰하게 되면, 소유가 있기 위해서 말과 말의 제도화로서 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말과 법이 있기 위해서 ‘주체적 자연’U

24) K. Marx, op. cit., 1983, S. 389, S. 393, S. 398/K. Marx, 앞의 책, 2000, 103쪽, 110쪽, 115-116쪽.

25) K. Marx, op. cit., 1983, S. 398/K. Marx, 앞의 책, 2000, 115쪽.

으로서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 노동조건들이 아니라 법이 주체일 경우 ‘객체적 자연’보다 ‘주체적 자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미에 다가감으로써 이성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인간 사회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성을 가르치는 교사다.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조직은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며 말이 빚어내는 관계들로 만들어진다. “‘법률’에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강요되는 말과 글이 등장”한다. “법은 인간 정신세계의 무한성을 물리적 경험의 유한성에 연결하고, 그럼으로써 이성의 제도화라는 인류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세 이후 서구의 국가는 “법의 원천이자 권리들의 원천”으로서 입법자이다.²⁶⁾ 국가는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법적 상태에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적인 이해 관심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이다.

국가의 법은 선과 악,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명시하는 “로고스(기억할 만한 말, 고려해야 할 셈)”의 제도화이다. “로고스는, 어떤 음성의 발음은 정당한 것을 언표하는 데 적합한 말로 이해되는 반면 다른 음성의 발음은 단지 쾌감이나 고통, 동의나 반항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음으로 지각되게 만드는 셈이기도 한 것이다.”²⁷⁾ 랑시에르는 말은 고통과 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와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한다. 로고스의 이중성으로서

26) A. 쉬피오, 박재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6, 15-16쪽, 34쪽. 법률은 “어떤 법질서의 근거지를 가리키며, ... 법은 “법질서의 운용 규칙을 의미한다.” 법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있다. 법의 주관적 측면은 개별적 권리들이다.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권리들을 법(법의 객관적 측면) 안에, 즉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의 틀(법의 객관적 측면) 속에 편입해야 한다. 개별적 권리들이 등지를 틀러오는 규범적 건축물인 법은 국가로부터, 즉 군주나 국민의 입법 주권으로부터 비롯된다.”(A. Supiot, 앞의 책, 32-34쪽) 법률은 법의 객관적 측면이다.

27) J. Rancière, *La mé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진태원 옮김, 『불화: 정치와 철학』, 길, 2015, 53-54쪽/J. Rancière, *Disagreement, Politics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Julie Ro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pp. 22-23.

말과 셈은 평등과 불평등을 의미한다. 로고스의 제도화로서 국가의 법은 지배 장치로서 자격들(몫이 있는 자: 귀족, 부자, 자본가. 몫이 없는 자: 평민, 노동자)을 셈하여 나누는 지배의 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몫이 있는 자와 몫이 없는 자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것(지성의 평등의 가설)은 공리의 의미에서 전제이고, 그것은 검증될 수 있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전제의 두 수준이 있습니다. **논리적 함축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등의 가설은 불평등 그 자체를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언어의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과 그가 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령도 실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찌 되었든 불평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 불가능한 평등의 수준을 전제**해야 합니다.”²⁸⁾

로마 초기의 귀족들은 로고스(기억할 만한 말, 고려해야 할 셈)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몫이 있음과 몫이 없음을 나누었다. “평민들은 로고스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체의] 부분들이 **아니다**.” 귀족들은 평민들은 로고스(말)가 없는 존재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로마 초기 역사 이야기에서 “볼스 키인들에 맞선 전쟁 끝무렵에서 시작해 평민 군대가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철수했을 때, 협상 대표자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유명한 우화를 평민들에게 들려준다. 그는 귀족들은 놀고 있는 ‘위’이고, ‘사지’로서 평민들은 놀고 있는 위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사지’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우화를 통해서 평민들과 협정에 성공하고, 평민 군대는 원대 복귀한다.²⁹⁾ 그러나 정작 갈등의 핵심은 귀족들(놀고 있는 위)과 평민들(일하는 사지)이라는 공동체적 신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28) J. Rancière, 앞의 책, 2020, 551-552쪽 필자 강조.

29) J. Rancière, 앞의 책, 2015, 59쪽, 54쪽, 54쪽 역주 2/J. Rancière, op. cit., 1999, p. 26, p. 23.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말’로서 협정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귀족들은 평민들을 공동체의 ‘부분들’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이와 더불어 ‘영원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평민들은 협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귀족들과 평등하게 되었다.

랑시에르는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귀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평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굶주림과 분노의 아우성이 아니라, 공통의 것들에 대해 말하는 제대로 발음된 말들”이라고 한다.³⁰⁾ “평민들의 입에서는 논리적으로 소음 말고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데도, 대표인 메네니우스가 평민들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랑시에르는 발랑슈의 『파리 리뷰』 기고문을 인용한다. “어찌 메네니우스가 ‘그들도 우리처럼 말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 그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들은 덧없는 소리이고 일종의 울음소리이며 지능의 명시적 표현이 아니라 욕구의 기호에 불과한, 일시적인 말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변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영원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하노라고.”³¹⁾

평민들은 메네니우스 아그라파의 우화를 이해함으로써 불평등(공동체적 신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에 대한 썸)이 있기 위해서 평등(공동체의 공통적인 것으로 말)이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로고스의 이중성으로 말과 썸이 나누어진단다. “말과 썸이라는 로고스의 이중 의미는 이러한 갈등이 작용하는 장소이다. … 정치가 존재하게 해주는 말은 말과 그것(간극)의 썸 사이에 간극 자체를 측정하는 말이다.”³²⁾ 말과 간극의 썸은 근대 이후

30) J. Rancière, 앞의 책, 2020, 205쪽.

31) J. Rancière, 앞의 책, 2015, 55쪽/J. Rancière, op. cit., 1999, pp. 23-24.

Pierre-Simon Ballanche, “Formulé générale de tous les peuples appliqués à l’histoire du peuple romain”, *Revue de Paris*, septembre, 1830, p. 94를 J. Rancière, 앞의 책, 2015, 55쪽에서 재인용/J. Rancière, op. cit., 1999, requote on p. 24.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간극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치안은 상품(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사적 소유를 법에 속하는 ‘공적 영역’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노동을 자본가의 지배에 속하는 ‘사적 영역’으로 분할한다.

“이(치안) 질서는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의 질서로서, 어떤 활동은 가시적인 것으로 다른 활동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어떤 말은 담론에 속하는 것으로, 어떤 말은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만든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노동의 장소를, 공적 영역(the public domain)이라 불리는 것에 고유한 보기 및 말하기 양식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사적 영역(a private space)으로 만든 것이 치안의 법이다.”³³⁾ 그러나 “최종 심급에서 불평등이 가능한 것은 평등 때문이다.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지배의 논리를 이러한 평등의 효과가 가로지를 때 정치가 존재한다.”³⁴⁾ 법에 의한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적 소유로서 공적 영역과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지배로서 사적 영역은 ‘해방의 삼단논법’에 의해서 잘못으로 나타난다.

대전제: “1830년에 막 공포된 현장 전문에는 모든 프랑스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혀 있다.” 소전제: “1833년에 파리의 재단사들은 양복점 주인들이 급료, 노동 시간, 일부 노동 조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시작했다. ... 그렇지만 양복점 주인 협회장인 슈바르츠Schwartz 씨는 우리의 근거들raisons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그에게 급료를 재검토해야 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근거들을 그는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한다.” 결론: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그와 평등한 자들로 대하고 있지 않다. 그는 현장에 기입된 평등에 위배된다.”³⁵⁾

32) J. Rancière, 앞의 책, 2015, 58쪽/J. Rancière, op. cit., 1999, p. 26.

33) J. Rancière, 앞의 책, 2015, 63쪽/J. Rancière, op. cit., 1999, p. 29.

34) J. Rancière, 앞의 책, 2015, 46쪽/J. Rancière, op. cit., 1999, p. 17.

35) J. Rancière,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이 파업에서 재단사들과 양복점 주인들은 사적·공적으로 관계한다. 사적 관계는 ‘경제적 의존 관계’이다. “그것은 ‘사회 현실’—노동 조건과 인격적 관계들의 예상로운 질서 속에서 메아리치는 어떤 역할들의 분배—을 낳는다. 그것은 불평등의 ‘사회 현실’이다.” 공적 관계는 법적·정치적 관계이다. “그것은 정초적 텍스트들에 나타나듯이 현장 전문 인권선언에 평등을 기입하는 것이다.” 이 법-정치적 관계는 “또 다른 ‘사회 현실’, 곧 평등에 바탕을 둔 사회 현실을 낳는 힘을 갖고 있다.” 이 해방의 삼단논법은 현장 전문의 ‘법 앞에 평등’에 근거해서 법에 기입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한 생산의 사적 영역·노동현장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법-정치적 기입/기록 속에 잠재적인 상태로 있는 평등이 일상생활 속으로 번역되고, 자리 옮기고, 극대화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재단사들이 “스스로 해방한다는 것은 이탈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세계(common world)를 함께-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 비록 겉모습은 그와 반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와 동일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³⁶⁾

해방의 삼단논법에서 양복점 주인들이 “공통적인 말(a common language)”의 제도화로서 ‘법’을 함께 나누어 갖는 말하는 사람들과 고용되어 노동하는 재단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의 중간항”을 보지 못하고 있다.³⁷⁾ 이 중간 항은 법에 기입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이고, 이 사적 소유가 ‘경제적 의존 관계’라는 사적 영역을 예상로운 ‘사회 현실’로 구성하고 있다. 만약 양복점 주인들이 재단사들과 ‘법 앞에 평등’함을 거부할 경우에 동일한 법에 기입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중

길, 2008, 110쪽/J. Rancière, *On the Shores of Politics*, Translated by Liz Heron, Verso, 2007, pp. 45-46.

36) J. Rancière, 앞의 책, 2008, 113-114쪽/J. Rancière, op. cit., 2007, p. 49.

37) J. Rancière, 앞의 책, 2015, 95쪽/J. Rancière, op. cit., 1999, p. 51.

간 항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평등한 '경제적 의존 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재단사들의 파업은 '사적 소유'와 '법 앞에 평등'이 기입된 법과의 관계 속에서 '급료, 노동시간, 일부 노동 조건들'을 재규정하려는 경우에 합법적인 정당성을 드러내게 된다.

재단사들은 "사회적 기능으로서 노동의 몫과, 공동체의 공동성(the common,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정의 속에서 노동을 실행하는 이들의 몫의 부재 사이의 괴리를 측정하는 주체다." "고전적인 형태의 노동자 파업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두 가지 것을 함께 결합할 수 있다. 하나는 「인권선언」에서 선포된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시간 내지 작업장 규율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다. 이 경우 파업의 정치적 행위는 서로 관계가 없는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고, 관계와 비관계를 계쟁의 대상으로 함께 보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구성은 노동의 '몫'을 정의하는 질서에서 일련의 위치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곧 그것은 개인(고용주)과 개인(그의 피고용자들 각자)의 다수의 관계들이 집합적 관계로 제기된다는 것, 노동의 사적 장소가 공적 가시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기된다는 것, 소음(기계 소리 및 고함이나 고통의 소리)과 논증적인 말(노동의 장소와 몫을 사적 관계로 형상화하는)이 맺는 관계의 지위 자체가 재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한다."³⁸⁾

국가는 '법 앞에 평등'과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적 소유를 법에 기입하고 있다. 법에 기입된 공적 영역에서 상품의 소유가 사적 영역의 노동 현장에서 생산수단의 비소유자로서 노동자의 피지배를 규정한다. 우화와 비교하면 사적 영역에서 자본가는 '놀이 있는 위'이고, 노동자는 '일하는 사지'이다. 이 불평등한 '셈'이 있기 위해서 공적 영역에서 평등한 '말'로서 '법 앞에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평등은 그것의 "고유한 행위에 의해 발생

38) J. Rancière, 앞의 책, 2015, 73쪽, 79쪽/J. Rancière, op. cit., 1999, p. 36, pp. 40-41.

하고 성장하는 잠재력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을 가진 로마군대의 평민들과 ‘해방의 삼단논법’을 주장하는 1833년 파리의 재단사들은 “평등은 언제나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잠재력이라고 주장함”을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드러내었다. “해방에 대한 이 새로운 관념의 핵심은 이해 가능성과 공동체의 공통 조건(the common prerequisite)으로서,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입증하려고 애써야 하는 전제로서 지적 능력의 평등을 상정하는 것이다.”³⁹⁾ 그러므로 국가의 법은 사적 영역의 노동현장에서 노동력과 노동의 불평등한 교환을 강제하는 지배의 장치이고, 동시에 공적 영역의 현장 전문에서 ‘법 앞에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해방의 장치로서 국가의 법은 써진 말로서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어떤 공통의 공간을 규정합니다. 합법적인 발설자가 없는 말과 사유의 유통, 규정된 전달 양태도 특수한 수신자도 없는 이 말 없는 말의 공간은 … 민주주의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는 동시에 써진 법의 체제이고, 이 체제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특수한 지위”가 없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는 써진 말은 글쓰기로서 법이 되고, 법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평등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통치의 형태도 사회의 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 그 자체의 설립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의 근본적인 능력에 대한 긍정이다.”⁴⁰⁾ 그래서 시민들은 써진 말의 제도화로서 ‘법 앞에 평등’을 근거로 해방을 수행할 수 있다.

5. 결론

근원적으로 원자적 개인은 도그마로 주어진 공동체의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말의 제도화로서 법으로 연결된 국가

39) J. Rancière, 앞의 책, 2008, 116-117쪽/J. Rancière, op. cit., 2007, pp. 50-51.

40) J. Rancière, 앞의 책, 2020, 206쪽, 623쪽.

의 시민이 된다. 국가의 법은 공통적인 것과 (비)물질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이 원자적 개인에게 공동체와 공통적인 것이 된다.

네그리와 하트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사회적 협력·공동체의 생산물이다. 디지털화에서 생산자와 생산물은 동일한 비물질적인 생산물이고, 말·이성·법으로 연결된 생산자의 신체이다. 이 조건에서 비물질적인 생산물이 사적 소유와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공통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자본순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자본가는 공통적인 것을 지적 재산권, 상품권, 특허권을 통해서 지대형태로 착취할 수 있다.

한편으로 랑시에르는 “정보와 소통의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산출된 집단 지성의 형식들과 자신들의 단어를 가지고 이 생산에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긍정하는 남자들, 여자들의 집단적인 지성의 형식들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자본가의 상품(생산수단과 노동력)에 의해서 산출된 집단지성과 생산의 주체들과 그들의 소유물에 의해서 산출된 집단지성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랑시에르는 “생산 체계의 논리에 의해 산출된 지성은 항상 이 체계의 논리에 속”하고, “반면 혁명적인 집단 지성은 이 생산과 체계의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이 생산의 주체들(agents)의 집단적인 역량의 긍정”이라고 말한다.⁴¹⁾

랑시에르는 사회적 협력·공동체의 생산물로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공통적인 것을 사적·공적 소유라고 말한다. 이 주장과 모순되게도 그는 평등한 말이 불평등한 쉼의 전제이고, 공동체의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말과 말의 제도화로서 법이고, 공통적인 것의 사적 소유와 법 앞에 평등이

41) J. Rancière, 앞의 책, 2020, 620쪽.

국가공동체의 법에 가입되어있다고 말한다. 국가의 법은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평등을 위한 해방의 장치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평등한 공통적인 것은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전제이다. 랑시에르는 불평등의 조건으로서 공적·사적 소유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통적인 것의 평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네그리와 하트는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으로 국가의 법을 자본가들을 위한 지배 장치라고 파악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공통적인 것을 전제가 아니라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들은 목적으로서 (디지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이론을 구성하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은 동일한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말·국가의 법·(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은 불평등이 가능하기 위해 평등하게 주어진 공통적인 것이고 그리고 해방의 장치이다. 정치적·경제적 의미에서 지성의 평등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디지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은 묶이 있는 자와 묶이 없는 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제이다. 사적·공적 소유가 가능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것이 전제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의 말’과 ‘법 앞에 평등’이 전제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 랑시에르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이 사회적 협력·공동체의 생산물이고, 동일한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 말, 법이 동일한 공통적인 것이다. 말, 법, (디지털) 비물질적인 생산물이 동일하게 사회적 협력·공동체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공리적으로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원자적 개인은 법과 권리의 원천으로서 국가와 연대하는 (디지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의 자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 연구공간 L역음,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난장, 2012.
- 이문호,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 '노동사회학적 관점'에서 -」, 『노동연구』 4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 Capra, Fritjof·Mattei, Ugo, *The Ecology of Law*, 박태현·김영준, 『최후의 전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Hardt, Michael, "The Common in Communism", 연구공간 L 옮김, 「공통적인 것과 코뮤니즘」, 연구공간 L역음,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난장, 2012.
- Marx, Karl·Engels, Friedrich, *Marx Engels Werke Bd. 35, Briefe(Januar 1881-März 1883)*, 1979.
- _____, 김호균 옮김, 「마르크스가 제네바에 있는 베라 이바로브나 자술리치에게」 (런던, 1881. 3. 8.),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중원문화, 1990.
- _____, *Marx Engels Werke Bd. 42,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983.
- _____,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백의, 2000.
- MEW : Karl Marx·Friedrich Engels, *Werke*, hrsg. v.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entralkomitee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Dietz Verlag, Berlin (Ost) 1956.
- Negri, Antonio·Hardt, Michael,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The Penguin Press, 2004.
- _____,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 _____, *Assembly*,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 _____, 이승준·정유진 옮김, 『어셈블리』, 알렘, 2020.
- Piketty, Thomas, *Capital et Idéologie*, 안준범 옮김, 『자본과 이데올로기』, 문학동네, 2020.
- Rancière, Jacques,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_____, *On the Shores of Politics*, Translated by Liz Heron, Verso, 2007.
- _____, *La haine de la démocratie*, 허경 옮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 대상인가』, 인간사랑, 2011.
- _____, *La mésentente: Politique et philosophie*, 진태원 옮김, 『불화: 정치와 철학』, 길, 2015.
- _____, *Disagreement, Poitics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Julie Ros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_____, *Et tant pis pour les gens fatigués: Entretiens*, 박영옥 옮김, 『자크 랑시에르와의 대화 — 피곤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인간사랑, 2020.
- Schwab, Klaus and 26 other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진희·손영수·최시영 옮김,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흐름 출판, 2016.
- Schwab, Klaus,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이엽,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새로운현재, 2018.
- Supiot, Alain, *Homo juridicus*, 박제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2016.

The Common and Public·Private Ownership

Ha, Yong-Sam

An atomic individual uses the words given as a dogma. The atomic individual becomes a citizen of the state, which is the source of the law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rds. State law is the basis for ownership of the common.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th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This product is the body of a producer connected by words, reason, and law, and is the common. However, the state legally enforces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 Capitalists can exploit the common through ownership.

Rancière says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not the common, but private ownership. But he says that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written in the laws of the state. In this sense, the state law is a governing device for capitalists, and also a device for liberation for workers' equality. What is the common in this case is the premise of private ownership. Therefore, he does not see the equality of the common as the premise of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Negri and Hart think of the law of the state which is the common, as the governing device for the capitalists, and consider the common as a purpose, not a premise. They say that the common, as a purpose is an alternative to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the common. In this respect, equality of intellect, equality before the law, and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re not the goal of resolving the inequality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but the premise. Words and equality before the law are presupposed to separate private and public ownership from the common.

Negri and Hart, Rancière fail to recognize that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products of social cooperation, and are the common. (digital) immaterial products, words, and laws are the common. Words, laws, and (digital) immaterial products axiomatically presuppose equality. Under these conditions, the atomic individual would be able to form an autonomous community of the common in solidarity with the state.

Key Words: the common, public·private ownership, community, state, speech, the law

·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2년 4월 15일 · 게재결정일: 2022년 4월 15일
